

(재)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
정 관

제정 2000. 2. 29	개정 2005. 3. 25	개정 2014. 07. 24
개정 2000. 8. 28	개정 2006. 9. 27	개정 2015. 01. 23
개정 2001. 7. 25	개정 2008. 9. 3	개정 2015. 03. 25
개정 2002. 11. 20	개정 2009. 7. 20	개정 2015. 07. 09
개정 2003. 3. 3	개정 2010. 4. 9	개정 2017. 04. 07
개정 2003. 9. 3	개정 2011. 1. 7	개정 2017. 12. 28
개정 2004. 3. 29	개정 2012. 1. 16	개정 2019. 06. 18
개정 2004. 8. 27	개정 2013. 1. 22	개정 2021. 08. 31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이 법인은 「재단법인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」 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이라 하고, 약칭은 「경기수원월드컵재단 또는 월드컵재단」 이라 한다. <개정 2002. 11. 20> <개정 2003. 3. 3> <개정 2019. 6. 18>

제2조(사무소)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에 둔다. <개정 2013. 1. 22>

제3조(목적) 법인은 지역 및 국내 축구발전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체육·문화시설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방체육진흥과 도민 화합을 도모하며, 나아가 세계축구 발전과 인류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2. 11. 20> <개정 2003. 3. 3>

제4조(사업) ①법인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

1. 월드컵경기장(부대시설 포함)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중·단기 종합 계획의 수립과 집행 <개정 2002. 11. 20> <개정 2003. 3. 3>
2. 월드컵경기장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임대사업, 집행 등에 관한 사항 <개정 2002. 11. 20> <개정 2003. 3. 3> <개정 2003. 9. 3>
3. 축구발전과 진흥에 관한 사항 <개정 2002. 11. 20> <개정 2003. 3. 3>
4. 종합스포츠센터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 <신설 2003. 9. 3>

5.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② <삭제 2000. 8. 28>

제5조(수익사업) ①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 <개정 2002. 11. 20> <개정 2003. 3. 3>

제6조(이익의 제공) ①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,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 <개정 2002. 11. 20>

②법인이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·출신학교·직업·성별·기타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.

제2장 임원

제7조(임원 및 직원의 정원) 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 <개정 2015. 3. 25> <개정 2015. 7. 9>

1. 이사장 1인
2. 부이사장 1인
3. 상임이사(사무총장) 1인
4. 이사 15인 이내(이사장·부이사장·상임이사 각 1인을 포함한다.) <개정 2002. 11. 20> <개정 2005. 3. 25>
5. 감사 2인 <개정 2002. 11. 20>

②직원의 조직은 1본부 3팀과 정원은 26명으로 하고, 그 외 사항은 직제 및 정원 규정으로 정한다. <신설 2015. 3. 25><개정 2015. 7. 9><개정 2021. 8. 31>

제8조(임원의 선임) ①임원은 공개경쟁모집으로 선출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 <개정 2000. 08. 28><개정 2015. 01. 23>

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하고, 감사 2인중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장은 당연직 감사로 한다. <개정 2002. 11. 20> <개정 2011. 1. 7><개정 2012. 1. 16>

1. 경기도지사
2. 경기도 수원시장
3.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<신설 2005. 3. 25> <개정 2008. 9. 3>
4.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<개정 2012. 1. 16>
5.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 <신설 2002. 11. 20> <개정 2004. 8. 27> <개정

2010. 4. 9>

6. 수원시 문화체육교육국장 <신설 2005. 3. 25> <개정 2006. 9. 27>
<개정 2008. 9. 3> <개정 2011. 1. 7> <개정 2017. 4. 7>

7. 수원시체육회 사무국장 <개정 2006. 9. 27> <개정 2010. 4. 9>

③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④ <2004. 8. 27 삭제>

제8조의 2(임원추천위원회) ① 임원 임명의 공정성·전문성·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

1. 경기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 3인
2. 수원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인

[본조신설 2017. 12. 28]

제9조(임원의 해임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의 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1.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10조(임원의 선임제한)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.

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
제11조(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
2. 지방출자출연법 제10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<개정 2019. 6. 18>

제12조(임원의 임기)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임원은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. <개정 2002. 11. 20>

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13조(임원의 임무) ①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,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, 이사회 의장이 된다.

②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며 목적사업을 전담한다.

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④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
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위법·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<개정 2003. 3. 3>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
제14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·상임이사의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, 이사장·부이사장·상임이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②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이사장·부이사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로 상임이사가 소집하고,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.

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이사장·상임이사 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15조(고문 및 자문위원 등) ①법인은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과 분야별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②고문 및 자문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.

③고문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2. 11. 20>

제3장 이사회

제16조(이사회 구성) 이사회는 이사장·부이사장·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.

제17조(소집) ①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

②이사회에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8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2.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-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제19조(서면결의) ①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서면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20조(의결정족수)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②이사회 의결권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.

제21조(이사회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2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4.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5. 법인의 예산·결산·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·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6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7.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22조(이사회 의결제척 사유)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4장 재산 및 회계

제23조(재산의 구분 등) ①이사장은 자산을 재단활동을 통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

을 위하여 제공하여야 하며,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 <신설 2004. 3. 29>

②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1.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, 그 목록은 [별표 1]과 같다.

2.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③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3. 3. 3>

제24조(기본재산의 처분)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·증여·임대·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,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야 한다. <개정 2000. 8. 28>

제25조(수입금)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하며, 수입중 기부금은 연간모금액과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. <신설 2009. 7. 20>

제26조(차입금)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야 한다.

제27조(회계연도 등) ①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②법인의 회계는 정관 제4조 제1항의 사업추진을 위한 목적사업회계와 목적사업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 <신설 2004. 3. 29>

제28조(예산편성) 법인의 세입·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 <개정 2003. 3. 3>

제29조(결산)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 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06. 9. 27>

제30조(세계잉여금) 매 회계연도의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 의 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.

제31조(계속비) 법인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
제32조(임원의 보수) ①사업의 운영을 전담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다른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상임이사의 보수는 이사장이 정한다. <신설 2004. 3. 29>

제33조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) ①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1. 법인의 설립자
2. 법인의 임원
3. 법인의 설립자,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4.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
②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제34조(회계감사)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제5장 사무처

제35조(사무처) ①이사장과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.

②사무처에는 사무총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 다만, 사무총장은 상임이사가 겸임한다.

③사무처의 조직·분장사무 및 직원의 임면과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35조의1(임기만료 사무총장에 의한 직무대행)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된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7. 24>

1. 연임을 위하여 그 재임명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2.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 하는 경우

제6장 보 칙

제36조(정관변경)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03. 3. 3>

제37조(업무보고)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3. 3. 3> <개정 2006. 9. 27>

제38조(법인의 출연지분) 기 투자비를 포함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에 대한 법인의 출연지분은 경기도와 수원시의 비율을 6:4로 한다.

제39조(법인의 해산) ①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03. 3. 3>

②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지분에 의하여 경기도와 수원시에 각각 귀속된다.

제40조(세부규정)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의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) 이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설립 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.

구 분	소 속	직 책	성 명	임 기
이사장	경 기 도	도 지 사	임 창 열	당연직
부이사장	수 원 시	시 장	심 재 덕	당연직
상임이사	한국재난연구원	원 장	이 해 재	선임(3년)
이 사	경기도의회	의 장	이 계 석	당연직
	경기도교육청	교 육 감	조 성 윤	당연직
	경 기 도	기획관리실장	정 승 우	당연직
	경 기 도	문화관광국장	이 인 재	당연직
	수원시의회	의 장	김 용 서	당연직
	범도민추진위원회	위 원 장	홍 기 현	선임(3년)
	농업협동조합중앙회경기지역본부	본 부 장	김 훈 동	선임(3년)
	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	사무총장	김 규 완	선임(3년)
	삼성전자(주)	고 문	문 병 대	선임(3년)
	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	회 장	김 선 규	선임(3년)
	수원상공회의소	회 장	우 봉 제	선임(3년)
	수원YWCA	사무총장	김 은 희	선임(3년)
	경기도수원교육청	교 육 장	이 학 재	선임(3년)
감 사	경 기 도	체육진흥과장	한 기 택	당연직
	민병헌법률사무소	변 호 사	민 병 현	선임(3년)
	장보훈회계사무소	공인회계사	장 보 훈	선임(3년)

제4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.

성 명	주 소	날인
임 창 열	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43-7	
심 재 덕	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186	
이 계 석	평택시 안중면 안중리 277	
조 성 윤	하남시 춘궁동 420-3	
정 승 우	안산시 월피동 448 현대A 204-1303	
이 인 재	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67 벽산한성A 809-1005	
김 용 서	수원시 권선구 매교동 30-8	
이 해 재	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26 현대A 106-605	
홍 기 현	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54-2	
김 훈 동	수원시 장안구 화서1동 100-2	
김 규 완	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89-8	
문 병 대	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-62 삼성보라매옴니타워 2204호	
김 선 규	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05-1	
우 봉 제	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25-26	
김 은 희	수원시 권선구 고등동 94-1 해창A 바동 404호	
이 학 재	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25-26	
한 기 택	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71-1	
민 병 현	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89-1 청광아트빌라 B동 401호	
장 보 훈	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872-1 연꽃마을 풍림@ 412-1504	

부 칙 <2001. 7. 25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이사회 임원 및 임기) 이사회 임원 및 임기는 별지와 같다.

이사회 임원 및 임기(2001. 7. 25)

구 분	소 속	직 책	성 명	임 기
이사장	경 기 도	도 지 사	임 창 열	당연직
부이사장	수 원 시	시 장	심 재 덕	당연직
상임이사	한국재난연구원	원 장	이 해 재	선임(3년)
이 사	경기도의회	의 장	이 규 세	당연직
	경기도교육청	교 육 감	조 성 윤	당연직
	수원시의회	의 장	김 용 서	당연직
	경 기 도	문화관광국장	이 인 재	당연직
	경기문화재단 사무총장	위 원 장	홍 기 현	선임(3년)
	농업협동조합중앙회경기지역본부	본 부 장	이 수 용	선임(3년)
	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	사무총장	김 규 완	선임(3년)
	삼성전자(주)	고 문	문 병 대	선임(3년)
	수원상공회의소	회 장	우 봉 제	선임(3년)
	수원YWCA	사무총장	김 은 희	선임(3년)
	경기도수원교육청	교 육 장	윤 석 중	선임(3년)
감 사	경 기 도	체육진흥과장	박 효 갑	당연직
	민병헌법률사무소	변 호 사	민 병 현	선임(3년)
	장보훈회계사무소	공인회계사	장 보 훈	선임(3년)

부 칙 <2002. 11. 20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이사회 임기) 이 정관 개정 후 최초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이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7월31일까지 한다.

부 칙 <2003. 3. 3>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3. 9. 3>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4. 3. 29>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4. 8. 27>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5. 3. 25>

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6. 9. 27>

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8. 9. 3>

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09. 7. 20>

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0. 4. 9>

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1. 1. 7>

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2. 1. 16>

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3. 1. 22>

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4. 7. 24>

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5. 1. 23>

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5. 3. 25>

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5. 7. 9>

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7. 4. 7>

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7. 12. 28>

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19. 6. 18>

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1. 8. 31>

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설립당시의 기본재산

구 분	금 액	비 고
재단출연금 (현 금)	일금오억원 (₩500,000,000)	○ 경상적경비 : 73백만원 ○ 사 업 비 : 427백만원

부동산의 목록

구 분	금 액	비 고
재단출연금 (부동산)	○ 토지 :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28번지외 197필지 - 면적 : 417,526 m ² ○ 건 물 - 건축면적 : 34,416.32 m ² - 연 면 적 : 70,132.79 m ²	○ 토지는 운동장 부지 전체 필지